

#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423
----------	------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2017.9.19. 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구분	규모(m <sup>2</sup> )	총계(건)	재정비(안)		비고
			존치	해제가능	
학교	378,440	33	32	1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집행계획

구분	총계		1단계		1,2단계		2단계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학교	32	1,810,981	9	506,315	11	750,055	12	554,611

##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목록 : 별첨1]

## 4. 참고사항

관련 법령 [별첨2]

【별첨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연번	위치	면적 (m <sup>2</sup> )	결정고시일	재정비(안)	단계별 집행계획
1	구로구 항동 100	10,552	2010-11-15	존치	1단계
2	송파구 가락동 479	12,705	2006-09-14	존치	1단계
3	강서구 마곡동 730-459	12,202	2017-05-04	존치	1단계
4	영등포구 신길동 2064	9,999	2007-11-29	존치	1단계
5	강동구 상일동 121	8,116	2006-01-17	존치	1단계
6	송파구 거여동 산49	10,334	2010-11-03	존치	1단계
7	송파구 장지동 17	11,030	2010-11-03	존치	1·2단계
8	중랑구 망우동 306-137	10,780	2011-11-11	존치	1단계
9	강동구 강일동 120-4	12,000	2012-12-21	존치	1단계
10	강동구 강일동 121-3	13,000	2012-12-21	존치	1단계
11	송파구 거여동 산50	11,222	2010-11-03	존치	1·2단계
12	강동구 강일동 53-1	12,000	2012-12-21	존치	1·2단계
13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11,194	2012-12-21	존치	1·2단계
14	강동구 강일동 473-4	11,000	2015-08-12	존치	1·2단계
15	서초구 반포동 1300	12,277	2017-04-27	존치	1·2단계
16	서초구 반포동 1305	10,615	2017-04-27	존치	1·2단계
17	강동구 둔촌동 180-1	16,125	2006-12-02	존치	1·2단계
18	서초구 방배동 974-3	8,112	2010-09-02	존치	1·2단계
19	강남구 개포동 567-1	9,877	2016-12-08	존치	1·2단계
20	강남구 자곡동 102	10,624	2018-01-09	존치	1·2단계
21	은평구 진관동 246-5	10,222	2006-12-28	존치	2단계
22	구로구 오류동 156-193	12,293	2006-12-13	존치	2단계
23	송파구 마천동 223(590)	23,683	2008-09-05	존치	2단계
24	동작구 흑석동 60	14,047	2008-09-11	존치	2단계
25	동대문구 이문동 87-14	8,000	2008-01-07	존치	2단계
26	은평구갈현동 285-241	7,752	2011-09-29	존치	2단계
27	서대문구 북가좌동 80-36	7,438	2007-04-12	존치	2단계
28	용산구 한남동 665-9	10,763	2009-10-01	존치	2단계
29	용산구 보광동 265-284	12,043	2009-10-01	존치	2단계
30	강북구 미아동 438	12,027	2010-03-18	존치	2단계
31	동대문구 전농동 325-58(691-3)	11,852	2006-02-16	존치	2단계
32	서대문구 북아현동 544	9,083	2008-02-05	존치	2단계
33	노원구 상계동 58-38	15,473	2008-09-11	해제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8~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8	'19	'20	'21		'22
합계				1,810,981	695,686			57,189	1,058,369	347,228 (272,062)	508,938 (412,288)	309,699 (217,749)	88,192 (20,876)	22,497 (4,104)	534,427 (131,290)	
1	구로구 향동 100	~2019	10,552	40,315	11,807				28,508 (28,508)	34,412 (28,508)	5,903				2030	
2	송파구 가락동 479	~2019	12,705	125,902	36,286				89,616 (89,616)	123,687 (89,616)	2,215				2026	
3	강서구 마곡동 730-459	~2020	12,202	25,665	25,665					11,530	13,797	338			2037	
4	영등포구 신길동 2064	~2020	9,999	48,849	29,711				19,138	36,167 (19,138)	12,682				2027	
5	강동구 상일동 121	~2020	8,116	76,048	23,700				52,348 (52,348)	57,088 (52,348)	16,590	2,370			2026	
6	송파구 거여동 산49	~2020	10,334	29,936	29,936					956	17,874	11,106			2030	
7	송파구 장지동 17	~2020	11,030	30,414	30,414					936	18,389	11,089			2030	
8	종로구 망우동 306-137	~2021	10,780	47,338	12,004				35,334	23,669 (23,669)	14,201 (11,665)	9,468			2031	
9	강동구 강일동 120-4	~2020	12,000	56,129					56,129	40,025 (40,025)	14,090 (2,014)				2032	
10	강동구 강일동 121-3	~2021	13,000	56,133					56,133	42,427 (42,427)	11,993 (11,993)	1,713 (1,713)			2032	
11	송파구 거여동 산50	~2021	11,222	27,267	27,267						1,929	16,370	8,968		2030	
12	강동구 강일동 53-1	~2021	12,000	58,918	16,026				42,892		40,528 (40,528)	9,056 (2,364)	9,334		2032	
13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2021	11,194	55,484	21,902				33,582		37,909 (33,582)	8,653	8,922		2032	
14	강동구 강일동 473-4	~2021	11,000	47,916	14,916				33,000		35,944 (33,000)	5,890	6,082		2035	
15	서초구 반포동 1300	~2022	12,277	138,996					138,996		122,230 (122,230)	12,378 (12,378)	4,126 (4,126)	262 (262)	2037	
16	서초구 반포동 1305	~2022	10,615	117,791					117,791		105,201 (105,201)	9,255 (9,255)	3,085 (3,085)	250 (250)	2037	
17	강동구 둔촌동 180-1	~2022	16,125	141,673	32,668				109,005		112,240 (109,005)	14,555	14,878		2026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8~2025)										실호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 자	공공기 여	'18	'19	'20	'21	'22		'23년 이후	
18	서초구 방배동 974-3	~2023	8,112	55,204	16,818					38,386			41,715 (38,386)	9,987	3,329	173	2030
19	강남구 개포동 567-1	~2023	9,877	33,421					33,421				19,934 (19,934)	9,987 (9,987)	3,329 (3,329)	171 (171)	2036
20	강남구 자곡동 102	~2022	10,624	42,971					42,971				27,995 (27,995)	3,678 (3,678)	263 (263)		2038
21	은평구 진관동 246-5	2020~	10,222	20,528	20,528								20,342		186		2026
22	구로구 오류동 156-193	2023~	12,293	32,100	32,100											32,100	2026
23	송파구 마천동 223(590)	2023~	23,683	59,543	59,543											59,543	2028
24	동작구 흑석동 60	2023~	14,047	56,926			57,189									56,926	2028
25	동대문구 이문동 87-14	2023~	8,000	33,319	14,767					18,552						33,319 (18,552)	2028
26	은평구 갈현동 285-241	2023~	7,752	29,318	29,318											29,318	2031
27	서대문구 북가좌동 80-36	2023~	7,438	32,247	32,247											32,247	2027
28	용산구 한남동 665-9	2023~	10,763	68,732						68,732						68,732 (68,732)	2029
29	용산구 보광동 265-284	2023~	12,043	72,092	72,092											72,092	2029
30	강북구 미아동 438	2023~	12,027	45,276	31,287					13,989						45,276 (13,989)	2030
31	동대문구 전농동 325-58	2023~	11,852	59,917	59,917											59,917	2026
32	서대문구 북아현동 544	2023~	9,083	44,613	14,767					29,846						44,613 (29,846)	2028

## 【별첨 2】

### 관계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9.] [법률 제12127호, 2018.2.9., 타법개정]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7.9.19.]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④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